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철수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90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6월 9일

발 의 자 : 전철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동율, 최영수, 서윤기, 유찬중,  
문상모, 김현기, 이명희, 최응식,  
최조웅, 장홍순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, 도시재정비위원회,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상정안건 사전검토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2017년 5월 18일 도시재생위원회의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·공간계획 관련 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서울시 도시공간계획의 연계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·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도시재생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신설함(안 제64조제2항제3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및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
  - 가.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 제21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
  - 나.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
  - 다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</p> <p>제64조(설치 및 기능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시도시계획위원회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 제 21조제1항의 서울특별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</p> <p>제64조(설치 및 기능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</u></p> <p>가. <u>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 제21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</u></p> <p>나. <u>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</u></p> <p>다. <u>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